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체계 마련 〉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8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적 검토	4
1. 제정법률안의 내용 및 배경	4
2. 제정법률안의 구성체계	8
3. 총괄 검토의견	10
4. 관계 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	15
IV . 주요 내용별 검토	17
1.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7
2. 기본원칙,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21
3.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25
4. 미디어교육 지원체계(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4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5. 14.

다. 회 부 일 : 2026.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위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를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의 역기능의 대응 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등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이라 하고, 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미디어교육시설”,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라 함(안 제2조).
- 다.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및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자격과 추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 위원들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평가지침에 따라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Ⅲ.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 및 배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이나 비대면 소통 등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의 역할도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시·공간의 압축적 활용, 새로운 경제동력의 창출 등 미디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한편, 미디어를 통한 허위·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사이버폭력 등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 일반 국민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생활을 신장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 및 각종 위험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역량¹⁾의 향상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미디어 역량 교육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디어 역량 개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처별·지자체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부처간 협업이나 종합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1) “미디어역량”이란 미디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며,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행사와 책임 등 수준 향상을 위해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결집하는 능력을 말함(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28.).

<부처별 미디어교육 추진 근거>

- (방통위) 방송법 제90조의2, 제9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 21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 제63조
- (문체부) 신문법 제35조, 지역신문법 제15조, 문화예술교육법 제15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 영화비디오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조의2, 게임산업법 제12조의4
-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제54조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

-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특히,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올바른 이해 능력과 능동적 활용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로, 디지털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에 따라 유사한 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으며, 각 법률안은 소관 부처에 따라 방미통위, 문체부 또는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구분	제 명	대표발의 (발의일)	소관 상임위
제17대 국회	미디어교육진흥법안	이경숙의원 (2007.4.6.)	문화관광위원회
제19대 국회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최민희의원 (2012.8.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김희정의원 (2013.9.1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20대 국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유은혜의원 (2018.5.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신경민의원 (2018.5.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1대 국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2020.8.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2021.7.14.)	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경희의원 (2022.11.29.)	교육위원회
제22대 국회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2025.1.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박수현의원 (2025.9.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의원 (2025.12.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2026.5.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2026.6.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의원 (2026.8.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그 중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디지털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의원		이훈기 의원	박수현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우영 의원	박주민 의원	이주희 의원
소관 상임위		과방위	문체위	문체위	과방위	문체위	과방위
미디어 정의		개념 정의	<열거 방식> ·방송,통신, 뉴스등 ·영화, 게임물 ·SNS게시물 ·대통령령	<열거 방식> ·방송,통신, 뉴스등 ·영화, 게임물 ·SNS게시물 ·대통령령	-	개념 정의	<열거 방식> ·방송,통신, 뉴스등 ·영화, 게임물 ·SNS게시물 ·대통령령
주관 위원회	설치	방송통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국무총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국무총리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	18명 이내	20명 이상 25명 이내	25명 이내	19명 이내	25명 이내	25명 이내
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방미통위	-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방미통위 등	-
기본 계획	계획명	디지털미디어 교육기본계획	미디어문화역 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지 원 종합계획
	수립 주체 (주기)	방송통신 위원회 (3년)	문체부장관 (3년)	국무총리 (5년)	미디어교육 위원회 (3년)	국무총리 (5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5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제명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본칙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등에 대한 정의규정과 기본원칙 마련,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향 규정,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 조문 체계 >

제1조 목적	제13조 회의 등
제2조 정의	제14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조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제15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4조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제16조 보수, 수당 등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7조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제18조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의견 청취
제8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0조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 등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연차 보고서
제12조 겸직금지 등	

< 제정안의 미디어교육 추진체계 >

목 적

- ◆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에 이바지

미디어교육의 원칙 등

- ◆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3)
- ◆ 미디어교육 받을 권리(§ 4)
- ◆ 국가 등의 책무(§ 5),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6)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추진체계

< 미디어교육위원회 >

- 설치: 방미통위 소속(§ 8①) -

- ◆ 구성(§ 9)
 - 공동위원장: 방미통위 위원장 & 호선된 위촉위원
 - 위원(19명 이내):
 - 당연직(과기정통부 · 교육부 · 국방부 · 문체부 · 복지부 · 성평등부차관, 방미통위 상임위원 등)
 - 위촉직(국회 추천 6, 방미통위 위원장 · 교육부장관 · 문체부장관 추천 3)
- ◆ 심의사항(§ 8②)
 -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 변경, 평가지침 마련 · 평가
 - 정책의 소관 조정 · 기관 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기타
 - 위원의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 10), 결격사유(§ 11), 회의(§ 13)
- ◆ 기능
 - 기본계획 수립 · 변경 · 국회 제출(§ 17①②③)
 - 시행기관의 시행계획 개선 요구(§ 17⑤)
 -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 평가결과 공개(§ 18)

< 시행기관 >

- 정책 · 사업 실시 -

- ◆ 주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도교육청, 공공기관(§ 2.4.)
- ◆ 기능
 - 시행계획 수립 · 위원회 제출(§ 17④)
 -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18)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연구 · 개발 · 보급(§ 20)
 -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21)

3. 총괄 검토의견

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미디어의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던 것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현재도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제정안이 규율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중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제정안은 미디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 없이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비판적 이해·창의적활용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바, 정보의 종류와 관계 없이 교육의 ‘목적’이 일치한다면 미디어교육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음.
-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중 문학, 미술, 영화 등은 문화콘텐츠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²⁾에서 이들을 교육과정에 활용한 교육에 대해 규율하면서 동 법에서는 문체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후 략)

부 소속의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즉, 교육의 목적(정보 접근 및 비판적 이해, 창의적 활용능력 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미디어교육’의 대상이 되지만, 정보전달의 내용(문화콘텐츠)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되어 다른 법률과 중복적으로 규율될 소지가 있음.

나. 법률안 소관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기관으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에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에서도 국무총리나 사회부총리,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그 소관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음.
 - 최민희('12)·신경민('18)·정필모('20)·이훈기('25)의원안은 방통위, 이경숙('07)·김희정('13)의원안은 문체부, 권인숙('21)·정경희('22)의원안은 사회부총리, 유은혜('18)·김승원('25)의원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를 구성하여 미디어교육의 시행 및 추진체계 등을 논의하였으며, 당시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TF’ 제안내용 >

- (추진체계 미디어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미디어교육위원회 산하에 학교미디어교육 분과위원회, 사회미디어교육 분과 위원회를 두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한다.

-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미교위)는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방통위 등에서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하 생략)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백서」 p.36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2.4)

○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접근권)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추진한 바 있고,³⁾

이재명 정부에서도 방미통위를 주무부처로 하여 국정과제 07.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소통·참여 역량 제고 정책을 추진 중임.⁴⁾

○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기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국가	소관 부처/기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온라인안전위원회
캐나다	문화유산부
핀란드	교육문화부, 국립시청각연구소(KAVI)
프랑스	교육부, 국립미디어교육센터(CLEMI)
아일랜드	미디어위원회(舊방송청)
영국	커뮤니케이션청(Ofcom), 교육부, 디지털문화스포츠미디어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26.7.)

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7.)

4)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9.)

- 이를 종합하면, 미디어교육에 대한 소관 문제는 기존 미디어 분야에서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이어지는 문제로 생각되며, 동 제정안의 입법 논의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소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 부처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소관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미디어·콘텐츠진흥 업무를 이관받은 방미통위가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미디어 전반의 정책 기관에 해당하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미디어 역량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중립성 담보 측면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가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특히, 방미통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미디어 역량교육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⁵⁾ 전국 광역권별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역량교육 정책의 허브 역할이 가능한 체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임.

○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AI시대의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미디어 이용 교육이나 유해성 예방 교육을 넘어 시민의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과 민주적 소통 역량,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적 표현 역량을 함께 형성하는 핵심정책으로, 문화·인문·콘텐츠·미디어를

5)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생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관장하고 진흥기능을 가진 문체부가 범정부 미디어교육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올바른 정보 수용 능력에 대한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예술·저작권·게임·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목표	교육 내용	근거 법령
비판적 정보 습득	미디어 이해, 비판적 분석 및 활용 능력 교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영상 이해, 문해력 증진	영상콘텐츠 구조 이해, 영상 언어 해석 능력 제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문해력 증진 (독서/출판)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한 문해력 제고, 출판 미디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2항
문화다양성 증진	미디어콘텐츠 속 다양한 가치 이해 및 비판적 분석을 통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감수성 제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IV.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제정법률안의 목적과 미디어교육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등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미디어의 역기능의 대응 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등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미디어교육시설”이란 미디어교육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디어 관련 사업자”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이란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2조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이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도 미디어교육 정의 이전에 미디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제정안의 목적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며(제1조), 민간 영역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제6조), 정작 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됨.
-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법률안은 2가지 방식(개념 서술 또는 예시 열거)으로 미디어를 정의하고 있음.

개념 서술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정보 형태 불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신문·방송·잡지·인터넷·소셜미디어·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정보를 생산·전달·유통하는 모든 매체
예시 열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박수현) 사람과 사람 또는 기계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로서 다음을 포함 △뉴스통신, 방송, IPTV,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 게임물,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뉴스통신, 방송, IPTV,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게임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선택한 정보를 공유·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SNS) 등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미디어 정의 부제에 관한 정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 자체의 규제나 진흥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적 정보 수용 등을 도모하는 등 ‘미디어 역량 교육’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도 미디어 정의 신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에 관한 최소한의 정의나 예시를 통한 범위라도 규정이 필요함.

○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정안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인 ‘미디어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AI·알고리즘과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기본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알고리즘 편향 등 미디어의 역기능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이해·분석·창작 및 윤리적 활용 등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미디어교육’ 용어를 ‘미디어 역량교육’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제정안의 목적에서도 미디어 역량교육이 미디어 기본사회로의 진입에 기반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방미통위 수정의견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u>미디어교육</u> 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함으로써, <u>국민의 삶의 질 향상</u> 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u>미디어 역량 교육</u> ----- ----- ----- ----- ----- ----- <u>미디어 기본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u> -----.

2. 기본원칙,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문화의 다양성 및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가 미디어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할 것 3.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4. 미디어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고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5. 청소년이 건전한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6.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 정 안

② 국가 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 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3조는 미디어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의 옹호를 위한 교육의 금지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미디어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그 본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4조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유권적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권리)로 해석됨.⁶⁾
 - 디지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주요 기반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⁷⁾의 교육권을 ‘미디어교육’ 분야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6) 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마649

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이 미디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언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7조는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 제정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해석 및 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음.

3. 미디어교육위원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 결격사유, 회의 운영,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평가지침 마련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

제 정 안

요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 조사요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1명, 성평등가족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6명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촉위원은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미디어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공지능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 정 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姓)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위촉해야 한다.

⑦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분보장과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3항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제 정 안

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6.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2조 (검직금지 등) ①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제 정 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등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제16조(보수, 수당 등) 위원에 대한 보수 등 처우, 전문위원·조사요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나. 검토의견

1) 위원회 소관 부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검토

- 제정안 제8조와 관련하여,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방미통위 소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를 방미통위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관계 부처 차관(급)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교육부·문체부장관 및 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촉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 마련에 필요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소속, 공동 위원장 체제로의 운영 여부 및 위원장 직급 수준 등은 미디어교육 정책의 중요성, 부처 간 이견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임.
- 다만,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본 제정안 제9조는 타 법률안과 달리 국방부·성평등가족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의 기본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서술한 “법률안 소관에 대한 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참고(12~16p)

계획 마련, 평가지침 수립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국방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법률안을 비교해보면, 각 제정안에서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속 및 당연직 위원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대표발의의원 (소관 상임위)		이훈기의의원 (과방위)	박수현의원 (문체위)	김승원의의원 (문체위)	김우영의원 (과방위)	김승원의의원 (문체위)	이주희의원 (과방위)
위원회명		디지털 미디어교육 위원회	미디어 문화역량 증진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심의위원회
위원회 소속		방미통위	문체부장관	국무총리	방미통위	국무총리	방미통위
위원장		(공동) 방미통위 위원장, 호선된 위촉위원	(공동) 문체부장관, 호선된 위촉위원	(단독) 호선된 민간위원	(공동) 방미통위 위원장, 호선된 위촉위원	(단독) 국무총리	(공동) 방미통위 위원 중 지명
당연직 위원	방미통위	-	-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장	위원
	교육부	차관	-	장관	차관	장관	-
	문체부	차관	-	장관	차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장관	차관	장관	-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차관(급) (2인)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차관(급)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 장,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	국방부차관, 성평등부차 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차관(급) (2인)	복지부장관	-

- 둘째, 안 제16조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수 관련 사항을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보수는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의 신분(상임 또는 비상임 여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⁹⁾, 영상물등급위원회¹⁰⁾ 등은 위원 중 상임위원 수를 명시하면서 상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

- 제정안 제11조의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무원 결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이나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성범죄 이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라는 점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의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형·벌금형·치료감호 선고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교육공무원(유치원 교원·학교 교사 포함¹¹⁾)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100만원 이상)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형 또는 치료감호)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해당 직역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즉, 동 제정안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영구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을 일반 공무원보다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음.

제 정 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u>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u>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u>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1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후략)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후략)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 <u>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u>(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u>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u>(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u>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종전 「국가공무원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24.12.31. 개정을 통해 임용결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도록 변경되었음.

-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

정에 대하여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¹²⁾을 내린 데 따른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미디어교육 위원회 위원의 성범죄 관련 결격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둘 것인지, 교사 등 교육공무원처럼 강화하여 적용할지에 관하여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공무원임권 침해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음란죄, 스토킹범죄 관련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결격사유를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에도 적용할 필요성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미통위 위원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 등 당연직 위원이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방미통위 위원의 결격사유¹³⁾와 동일하여 이에 해당할 소지가 없으나,

12) 2023.6.2.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¹⁴⁾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처럼 당연직 위원이 안 제11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연직 위원의 범위와 위원 결격사유의 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12조(검직금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검직금지의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검직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검직금지 의무 조항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안 제12조를 위반

-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겸직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거나 결격사유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파견·겸임, 경비지원 및 보조 규정에 대한 검토

- 첫째, 안 제14조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관계 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위원회에 사무국 등 사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자문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 둘째, 제정안 제15조는 국가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위원회 등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통상적인 입법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¹⁶⁾, 이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재량 규정 형태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6.6.9. 제정)

제14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민감정보 암호화 및 국가연구데이터 자동화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 신설 규정에 대한 검토

○ 미디어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주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협의·조정을 하기 위한 협의·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¹⁷⁾ 등 관계 법령과 지방시대위원회¹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¹⁹⁾ 등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또한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그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 제4조²⁰⁾에 따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0)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방미통위 소관 사무의 범위를 넘어 다부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부조직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문위원회로서 법적 위상과 정책 추동력 담보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 수 있다.

4. 미디어교육 지원체계(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평가체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 등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 사항 3.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계층별, 지역별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콘텐츠의 국내외 제작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교육 정책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2.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정 안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의 구체적 내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디어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교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미디어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아닌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은 행정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변경 포함) 주체를 국무총리 또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제정안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로의 제출 주체를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아닌 자문위원회 성격의 미디어교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디어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의결 주체가 미디어교육위원회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음.
 - 즉,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자신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바, ‘심의’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들은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각각 방미통위, 문체부장관 또

는 국무총리로 정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 관련 제정안의 기본계획 관련 내용 비교 >

제22대 국회 발의안		디지털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의원		이훈기 의원	박수현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우영 의원	박주민 의원	이주희 의원
기본 계획	계획명	디지털미디어 교육기본계획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기본계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체 (주기)	방송통신 위원회 (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년)	국무총리 (5년)	미디어교육 위원회 (3년)	국무총리 (5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5년)

- 둘째, 안 제17조제1항은 미디어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교육행정과 관련하여는 시·도교육청은 행정기관이 아니므로,²¹⁾ 시·도교육청의 장인 ‘시·도교육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 셋째, 제정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시행기관’의 미디어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을 정의하였을 뿐 약칭한 적 없다는 점에서 다른 조항과 같이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함.
- 넷째, 제정안 제20조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제정안 제22조는 미디어교육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섯째,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나 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함.
 -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미디어교육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일곱째**,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본 계획 수립, 평가제도 운영 등에 향후 5년간(2028~2032년) 2억 2,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등)	5	5	5	5	5	27	5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7조)	75	—	—	75	—	150	30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안 제18조)	50	—	—	—	—	50	10
합계	130	5	5	80	5	227	45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기본계획·평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동의) 방미통위 내 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디어 역량교육 정책의 일관성·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지속성을 높이려는 법률안 취지에 공감하며, 경제·안전 등 소관 업무 교육을 각 주무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 법률²²⁾의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방미통위 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함.

문 의 처

02)6788-5226

22)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경제교육: 재정경제부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교육: 법무부 및 법교육위원회